

개인정보 활용 및 취급 위탁 동의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당사는 고객님의 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계약진행 서류(당첨내역,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미비서류보완각서, 위임장, 개인정보변경 요청서, 당점동호포기확인서, 부적격당첨자사유서 이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일체)에 기재한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 및 이용시 고객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고객님은 아래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당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계약체결 및 관련 서류 작성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약시 구비서류(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등)
이용 및 보유기간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이용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분양대금 납부내역 제공,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위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시어만 아파트 공급계약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성명 : _____ (인/서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 계약체결 및 관련 서류 작성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성명 : _____ (인/서명)	

■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객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p> <p>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에서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탁업체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p>■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자(이하"수탁자"라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수탁자</th> <th>취급위탁 업무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유림아이엔씨(주)</td> <td>분양대금 및 일정 안내</td> </tr> <tr> <td>푸르지오 서비스</td> <td>하자보수 관리</td> </tr> </tbody> </table> <p>- 위탁업체 변경시 변경된 업체</p> <p>■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 분양대금관리, 입주관리 및 등기업무 진행을 위한 전산 정보 취급 - 하자보수 관련된 모든 행위 		수탁자	취급위탁 업무내용	유림아이엔씨(주)	분양대금 및 일정 안내	푸르지오 서비스	하자보수 관리
수탁자	취급위탁 업무내용						
유림아이엔씨(주)	분양대금 및 일정 안내						
푸르지오 서비스	하자보수 관리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취급위탁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_____ (인/서명)

※ 보존년한 : 보존등기일로부터 5년이내 계약서 폐기시까지 (단, 해약시 해약일로부터 5년간)



보증내용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증신청인(사업주체)명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읽고 []에는 ✓ 표시를 합니다.

공급계약내역	주택명 (사업장)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블록	동	호
사업주체 (공급하는자)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사업자등록번호	214-86-34082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확인자 (공급받는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1. 본인은 위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에 의거 아래사항이 포함된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보증서 발급 당시의 보증약관에 따름) 확인함 []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사업주체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분양계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분양계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
-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분양계약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분양계약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 창호,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분양계약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분양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사업주체·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사업주체·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사업주체·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분양계약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사업주체·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사항 확인함 []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이행(분양 또는 환급이행)을 받았더라도, 추후 가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이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⑤ 증여·상속 등	원
		⑥ 현금 등 기타	원	⑦ 소계	원
	차입금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small>※금융기관 대출액 있는 경우에만 기재</small>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미보유 []보유 (건) <small>※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small>	
⑨ 임대보증금 등		⑩ 회사지원금·사채 등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⑫ 소계	원
	⑬ 합계		원		
⑭ 입주 계획	[]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입주 예정 시기 : 년 월)		[]임대 (전·월세)	[]기타 (재건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는 국세청 등에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해당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① "자금조달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② ~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3. ②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4.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5.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
6. ⑤ "증여·상속 등"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적습니다.
7. ⑥ "현금 등 기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② ~ ⑤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이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습니다.
8. ⑦ "소계"에는 ② ~ 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⑧ ~ 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0. ⑧ "금융기관 대출액"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11. ⑨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적습니다.
12. ⑩ "회사지원금·사채 등"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13. ⑪ "그 밖의 차입금"에는 ⑧ ~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습니다.
14. ⑫에는 ⑧ ~ ⑪의 합계액을,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⑭ "입주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으며, "본인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에 √표시를 합니다.